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2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03월 21일(금)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4년 03월 25일(화)

4. 관련근거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6. 주요 내용

-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나.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다.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라. 각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마.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제16조)
- 바. 회의 참석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지급(안 제18조)

7.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14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각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안 제11조에서 각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3년10월4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관계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